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대상 및 요건 명확화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3년 4월 3일(월)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기준 [별표4] III. 제1호 개정)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별표4] III.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별표4] III. 제6호 개정)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붙임2.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동표 (02-2110-1550)
	단말기유통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이선희 (02-2110-1551)

현행	개정안
<p>Ⅲ. 감경 사유 및 비율</p> <p>1. 방송통신위원회 <u>조사에 적극 협력</u>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p> <p>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u>교육 프로그램</u>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p>	<p>1. <u>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협력한 경우</u></p> <p>가. <u>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내</u></p> <p>나. <u>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u></p> <p>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u>교육, 자율 준수 활동</u>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p> <p>가. <u>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내</u></p> <p>나. <u>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u></p>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100분의 5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가.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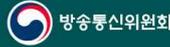
나.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에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

다.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대상 및 요건 구체화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 ▶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 **10~20% 이내 감경**
- ▶ 이외 협력 **10% 이내 감경**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자율준수 활동 등 도입·운영시

- ▶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은 경우 **5~10% 이내 감경**
- ▶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상당한 경우 **5% 이내 감경**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 **20~30% 이내 감경**
- ▶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 **10~20% 이내 감경**
- ▶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가능 **10% 이내 감경**